

# '21년 11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·개정 동향

## 훈령·예규·고시·지침

순번	제목	제·개정	등록일
1	[고시]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	개정	2021-11-10
2	[고시]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	개정	2021-11-10
3	[고시]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	개정	2021-11-11

의료기기  
통합정보  
BANK

※ 출처 : 보건복지부 훈령/예규/고시/지침 ↓ 클릭하시면 출처로 연결됩니다.

[http://www.mohw.go.kr/react/ib/sib0406ls.jsp?PAR\\_MENU\\_ID=03&MENU\\_ID=030406#](http://www.mohw.go.kr/react/ib/sib0406ls.jsp?PAR_MENU_ID=03&MENU_ID=030406#)

# 훈령·예규·고시·지침

## 1. 「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」 (개정일 2021.11.10)

### ◆ 주요내용

-제2조제2호 중 “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·치료재료의 구입,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된”을 “임산부 및 2세 미만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이하 영유아라 한다)의 진료와”로, “지급”을 “사용”으로 한다.

-제3조제1항 중 “1세 미만 영유아”를 “영유아”로 한다.

-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1년”을 각각 “2년”으로 한다.

-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란 중 “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제도”를 “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제도,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”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작성방법란 중 “1세”를 각각 “2세”로 한다.

◆ 시행일 : 2022.01.01

## 2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(개정일 2021.11.10)

### ◆ 주요내용

-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(체외수정 급여횟수 확대 및 만 45세 미만 본인부담률 인하)

◆ 시행일 : 2021.11. 15

## 훈령·예규·고시·지침

### 3. [고시]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(개정일 **2022.01.01**)

#### ◆ 주요내용

-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”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63호, 2020.11.24.)을 개정

#### ◆ 시행일 : **2022.01.01**

